

첨부1.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한국YWCA 정책의제 제안**

## 목 차

탈핵기후생명 부문	1
성평등 부문	10
평화통일 부문	21

# <탈핵기후생명 부문>

<p>목표</p>	<p>성평등 관점의 기후대응 및 탈핵-에너지 전환 체계 구축</p>
<p>제안 과제</p>	<p>1. 핵발전 확대 중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li> <li>○ 신규 핵발전소 추진 중단</li> <li>○ 방사성 오염수 방류문제 대응</li> </ul> <p>2.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시행</li> <li>○ 탈석탄법 제정 추진</li> <li>○ 에너지 복지 확대 정책 마련</li> </ul> <p>3.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 관리정책 수립</li> <li>○ 기후정책 성별영향평가 시행</li> <li>○ 기후위기시대 공공돌봄 체계 구축</li> </ul>

# 탈핵기후생명

## - 성평등 관점의 기후대응 및 탈핵·에너지 전환 체계 구축 -

- 한국 사회의 더 많은 시민들과 후보자들이 핵발전을 넘어 성인지 관점의 에너지 전환사회를 여는 선택을 하도록 22대 총선 공약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3대 핵심 과제인 핵발전, 에너지전환, 성인지 관점의 기후대응에 대한 YWCA 정책을 명시하여 정책수립을 요구한다.
- 한국은 2024년 2월 현재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2기의 핵발전소가 건설중인 핵발전 밀집국가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핵발전 확대정책을 표명하고 노후원전 18기의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건설, 주민동의 없는 고준위방폐물처리특별법, 막대한 SMR(소형모듈원전) 연구예산 책정,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허용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핵발전소 건설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상시적 주민피해를 일으키며, 기후재난에 취약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시급한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 전환 과정에서 누락되는 노동자와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복지가 마련되어야 한다.
- 기후위기는 또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기후재난은 특히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는 이를 위한 성별 분리통계와 같은 기초지표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의 기후정책이 전무하다. 따라서 성인지 관점의 통계자료 의무화 및 재난안전 관리정책 재수립, 기후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공공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마련과 시행이 시급하다.

## 정책 1 핵발전소 확대 중단

한국은 2024년 2월 현재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신한울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 중인 핵발전 밀집국가임.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핵발전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기후재난이 빈번해지는 지금, 다수호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의 안전사고 위험은 이미 현실화 되고 있음. 최근 월성과 고리 핵발전소 아래 발견된 활성단층은 지진설계가 미비한 핵발전소 지역의 위험을 가중시킴.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상시적 피폭은 지속되고 있음. 핵발전소 인근 여성주민의 갑상선암 발병률은 최대 2.5배 높게 나타난 바 있음. 이런 상황에서 한일정부의 핵발전 확대와 동맹을 위해 용인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핵발전의 위협을 온 국민에게 확대하는 결정이었음. 국내 핵발전소에서도 방사성 오염수는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고리1호기의 사용후핵연료 냉각수가 해상으로 방류될 예정임. 방사성 오염수와 비교할 수 없는 농도의 고준위 핵폐기물은 여전히 처리방안이 없음.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이 21대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수명연장은 물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결정일 뿐임. 전세계적인 추세는 'RE100(Renewable Energy 100%)'를 지향하며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것. 거대한 발전용량의 경직성 전원인 핵발전의 확대는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와 양립불가능함. 에너지전환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첫 시작은 핵발전소 확대 정책 중단임.

###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

-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는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1983년 월성 1호기와 고리 2호기가 가동되며 시작되었음. 1985년에서 1989년에는 매년 1~2호기 정도의 핵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해 고리 3·4호기, 영광(한빛) 1·2호기, 울진(한울) 1·2호기가 이때 가동을 시작했음. 이들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은 40년으로 2029년까지 모두 수명이 끝남. 또 다른 핵발전소보다 가동이 늦었지만, 설계수명이 짧은 월성 2·3·4호기도 각각 2026년과 2027년, 2029년 수명이 만료됨. 고리 1호기의 경우 시민의 힘으로 수명연장을 막고 영구정지를 결정했으나, 현재 40년의 수명만료 후 가동중지중인 고리 2호기를 필두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18기의 원전이 10년씩 수명연장 될 예정임. 지금껏 핵발전소는 잦은 사고와 고장을 일으켜 왔으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중대사고의 위험을 높임. 따라서 노후 원전은 단계적으로 영구 정지되어야 하며, 안전한 폐로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관련 법 규정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세부과제

- 노후원전수명연장금지법 제정
- 노후 핵발전소 안전 폐로절차 마련

○ 신규 핵발전소 추진 중단

-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차 전력계획을 통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이미 확정지은 상황이며, 지난 11월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핵발전 3배 확대를 위한 지지 선언문(NetZero Nuclear Initiative)에 서약했음. 이 선언문에는 핵발전의 발전용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SMR(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 증진 등의 내용이 담겨있음. '원전최강국건설'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미 막대한 SMR 연구 예산 배정이 논의되고 있음. SMR은 작은 핵발전소로, 기존 대형 핵발전소보다 3배 더 많은 핵폐기물을 발생시키지만 발전량은 적어 경제성이 낮음. 신규 핵발전소 역시 막대한 건설비용과 핵폐기물 처리비용, 신규 부지 확보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중대사고의 위험을 차치하더라도 재생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낮음. 더불어 15년의 건설기간을 생각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에는 너무 느린 발전임. 따라서 신한울 3, 4호기를 비롯하여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SMR 개발연구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정의로운 전환과 실효성 있는 기후대응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함.

· 세부과제

-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 핵발전소 추가 건설 금지
- SMR(소형모듈원전)개발 연구 예산 전액 삭감

○ 방사성 오염수 방류문제 대응

- 일본정부는 2023년 8월부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했으며, 한국정부는 국민의 높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용인했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폐로 계획에 맞춰 방류기간을 약 30~40년으로 정했음. 녹아내린 핵연료 880톤을 제거하기 전까지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사고 이후 지난 13년간 핵연료는 제거된 적이 없음. 현재 ALPS(다핵종제거설비시설)를 통한 처리에도 오염수 분출, 고장 등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이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국회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방사성 오염수 방류 중단 시기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규제하여 일본정부에 대응해

야 함.

· 세부과제

- 국회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문제 대응
-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 정책 2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한국을 포함한 198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3배 확충 및 에너지 효율 2배 증대와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합의했음. 그러나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순위 9위이자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최하위 국가로, 기후변화 대응지수에서 67개 국가 중 종합평가 64위로 평가받았음. 윤석열 정부는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 30.2%에서 21.6%로 축소함. 2050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핵발전과 석탄발전의 의존이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가 필요. 이를 위해서는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시민이 주도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또한 기존의 에너지 복지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화 개선 지원을 확충해야함. 또한 대중교통의 공공성 및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 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시행

- 시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베란다 미니 태양광, 자가용 가정 및 마을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예산 및 세제혜택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법 개정이 필요. 또한 도로와 주차장 등 공공부문의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시민참여형 태양광 펀드를 조성하여 일정 규모 이상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과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해야 함.
- 농촌에서는 농사 수입 이외에 태양광 판매 수익으로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마을형 협동조합 모델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히 임차농이 참여할 수 있는 상생형-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수립해야 함.

#### · 세부과제

- 분산에너지법 개정 추진
- 주차장법, 산업입지법 개정 추진
-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추진

### ○ 탈석탄법 제정 추진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탈석탄이 필요. 삼척 석탄화력발전 1, 2호기를 포함해 2021년 이후 새로 가동 중인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는 7기에 이르며, 신규 발전소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5,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또한 3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충남 보령화력 5, 6호기의 수명연장도 추진되고 있음. 한국의 석탄발전 설비 증가량은 세계 3위에 달하며, 석탄발전으로 인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주요 20개국(G20) 중 2위.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입법 청원된 ‘탈석탄법’(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제정을 통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출 뿐 아니라, 기존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 에너지복지 확대정책 마련

- 정부에서 시행중인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기초수급 세대에 연간 34만원 수준의 지원에 그치고 있어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에너지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하며,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재설정하고 복지예산을 확대해야함.
- 고효율 창호 교체, 단열 공사, 보일러 교체 등을 통한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을 확대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함. 또한 난방 연료에서도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 필요함. 국내 연탄이용가구는 약 8만 가구로, 연탄은 대표적인 저소득층 난방 연료로 사용되고 있음. 현재 석탄 광산이 2025년 폐쇄 예정이기에, 저소득층 난방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른 수요관리 4.5%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확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대중교통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교통망을 확충해야함.

### · 세부과제

- 에너지 복지예산 확대
- 주택 에너지 효율화 개선 지원 확대
- 대중교통법 개정 추진 및 공공교통 정책 강화

## 정책 3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마련

###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 관리정책 수립

-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의 68%는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음.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여성은 더 취약하지만, 한국에서는 성별분리통계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특성을 반영한 재난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움.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성별분리통계를 의무화하여 여성의 연령, 지역, 가구형태 등에 따른 세부적인 기후재난 적응대책을 마련해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재난상황에서 여성은 신체적 요인 외에도 재난약자와 동반하는 특수성으로 인한 취약성이 나타남. 따라서 취약계층의 정의에 임신부를 명기하고, 재난약자와 동반한 자 역시 법적 보호대상으로 지정해야 함. 또한 여성 및 취약계층의 재난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역량강화 역시 지원되어야 함.

#### · 세부과제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 기후정책 성별영향평가 시행

- 한국에는 이미 ‘성별영향평가법’이 있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후위기는 성별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므로, 위 법에 근거하여 현재 기후정책 전반의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함. 또한 기후 정책, 법령 및 관련 활동에 성별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조직구성이나 추진 과정에 40% 이상의 여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무엇보다 정부의 기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불평등의 요인을 명확히 분석 및 평가하여, 이에 근거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성인지적 관점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또한 기후정책 수립과 이행 및 평가에 있어, 성인지 관점의 전문가를 배치하고 담당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해야 함.

#### · 세부과제

- 기후정책 성별영향평가 시행
- 기후정책 수립 과정에 여성참여 40% 이상 보장
- 기후담당 공무원 성인지 관점 교육 의무화

## ○ 기후위기사대 공공돌봄 체계 구축

- 코로나로 인한 재난상황은 한국사회의 돌봄문제를 가시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교육 기관이 운영을 멈추면서 생긴 사회적 돌봄의 공백은 성차별적인 구조 안에서 여성에게 가중되었던 가사돌봄노동을 더 극대화시켰음. 따라서 감염병 외에도 폭우, 폭염, 홍수 등 기후재난 상황 시 공공돌봄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함. 현재 윤석열 정부 정책의 돌봄부문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올해 정부 예산안에는 전국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금이 전액 삭감되었음. 양질의 돌봄을 공공주도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복원하고, 기관을 운영하는 등 공공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 세부과제

- 재난 상황 공공돌봄 매뉴얼 마련
- 공공돌봄 체계 강화

# <성평등 부문>

<b>목표</b>	<b>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b>
<b>제안 과제</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li> <li>○ 여성 대표성 제고</li> </ul> </li>   <li><b>2. 노동환경 구조적 차별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투명성 제고</li> <li>○ 여성 고용 환경 조성 및 (기업 내) 여성 대표성 확보</li> <li>○ 사회서비스 돌봄 일자리 및 여성 노동자 일자리 개선</li> <li>○ 성평등 노동 추진체계 개선 및 지역소멸 대응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li> </ul> </li>   <li><b>3. 디지털 성범죄(기술 기반 젠더 폭력) 철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li> <li>○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 확대</li> <li>○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강화</li> </ul> </li>   <li><b>4.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강화 및 시스템 확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강화</li> <li>○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교육’을 위한 시스템 확립</li> </ul> </li> </ol>

# 성평등

## -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 한국YWCA는 전반적인 성평등 추진체계의 재정립과 성차별이 만연한 노동 환경의 구조적 차별 개선, 기술의 발전에 따라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철폐, 교육 시스템과 사회 전반에서의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에 대한 정책수립을 요구한다.
- 한국은 문화와 정치, 산업 및 노동 구조 안에 뿌리 깊은 구조적 성차별이 있는 국가로, 다양한 국제적 지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으며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공약으로 정하고 2024년 현재까지 폐지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령으로 정해져있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부정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왔다.
- 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및 학교 내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 및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방 교육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대 성별임금격차 국가로 30% 이상의 성별 임금 격차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35-39세에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다. 여성의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개선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 한국의 전반적인 성평등 문화 정착 및 성평등한 노동환경 개선, 디지털 성범죄 철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어야 하며, 정부 부처의 종합적인 정책 도입 및 실행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 정책 1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한국은 2022년 기준 OECD에 가입한 38개국 중 가장 큰 성별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남녀 간 돌봄·가사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 등 성차별적 문화가 사회의 큰 갈등 요소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젠더기반 폭력의 증가 등 성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산적해 있음.
-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성평등에 대한 도전과 저항이 증가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 표현의 대상은 주로 여성, 소수자, 약자이며, 한국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정부조직법」 제42조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임기 시작 전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예산과 기능을 축소하는 등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무력화시키고 있음.

### ○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성 주류화’는 1995년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에서 채택된 성평등 이행을 위한 전략으로, 한국은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이에 대한 이행 책임을 가짐. 한국에서는 성별 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의 방식으로 성 주류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 정부는 2023년 성별영향평가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삭제하려는 등의 퇴행적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의 보편성을 확대하고 성평등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확대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
-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컨트롤 타워로서 분명하고 세부적인 지위 및 권한이 규정되어야 하며,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여성가족부가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 아닌 전 부처의 정책 분석을 이행하여 전문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 세부과제

- 여성가족부 내 성 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 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 여성 대표성 제고

- 현재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1%이며, 지역구 의원에서 여성 비율은 11.4%에 불과함. 또한 전체 구·시·군 기초단체장 수 226명 중 여성은 7명이며, 지방 시·도지사에서 여성 지사가 부재함. 한국에서 여성은 과소대표되고 있음.

#### · 세부과제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및 모든 정부 정책 및 법 제정, 법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동등 참여 보장
-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 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율 명문화

## 정책 2 노동환경 구조적 차별 개선

- 한국은 OECD에서 처음으로 성별 임금 격차를 발표한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가장 큰 성별임금격차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성별임금격차가 30% 이상 유지되고 있음.
- 한국은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매년 발표하는 OECD 국가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2023년 기준 10년째 최하위 국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격차와 성별임금격차, 여성 관리자 비율, 기업 이사회 여성임원 비율 등의 노동 고용지표가 최하위권임.
-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성격차지수(GGI)에서도 한국은 경제참여 및 기회 지표에서 큰 성별 격차를 보여, 합산 수치에서는 총 146개국 중 105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한국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여 임금 차별 및 고용 상의 차별 금지를 보장하였고, 1997년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조약(The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을 비준하였고 이어서 1998년에 「고용 및 직업과 관련한 차별금지조약」을 비준함.
- 이러한 국내 법규 및 국제 규정이 한국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고 있으나, 임금 차별 개선을 위한 직·간접 조치는 미흡함.

### ○ 임금 투명성 제고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성별근로공시제’가 포함되어 있음. 고용노동부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2023.1.9. 발표)에 2023년 하반기 공공기관부터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명시함.
- ‘임금투명성 지침’에 따라 EU 기업은 2027년부터 성별 임금 격차와 성별 근로자 현황을 공개함.

### · 세부과제

- 성별근로공시제 추진
- 임금투명화법 제정

### ○ 여성 고용 환경 조성 및 여성 대표성 확보

- 2022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 상장기업의 여성임원을 의무화하였으나, 2021년 상장기업 중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 상장기업 152개사 중 6.8%만 달성.

- 여성고용률 제고와 고용상 성차별 해소 및 고용평등 촉진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17조 3항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적극적고용 개선조치를 시행함.

· 세부과제

- 여성임원 할당제 대상 기업을 현행 자산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에서 주권상장법인 전체 확대 및 이사회 임원 중 특정 성 30% 이상 규정 도입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여성고용 준수율 동종업종 동일규모 여성고용률 70% 기준을 전 산업 여성고용률 70% 기준으로 변경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3년 연속 미 이행 사업장 명단 전면 공개

○ 사회서비스 돌봄 일자리 및 여성 노동자 일자리 개선

- 2022년 3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세부과제

- 지역별 돌봄 노동자 지원 사업 격차 개선 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추진 실효성 제고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도 추진 안착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일반회계 기반 맞벌이 부부 출산 및 육아휴직 지원

○ 성평등 노동 추진체계 개선 및 지역소멸 대응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 고용평등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는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고용평등상담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나, 2024년 운영비 지원을 중단함.
- 고용노동부의 고용평등 전담 조직은 2009년 고용평등과 폐지, 2013년 고용평등정책관 폐지로 단독 조직이 부재한 상황.
- 또한 2022년 6월부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시행되어 전국 158개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

· 세부과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개 법률로 분법 추진
- 중앙부처 고용 평등 노동정책 총괄 부서 복원 및 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복원
- 지방노동청 전담 성평등근로감독관 배치 및 고용노동부 지원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복원

- 158개 새일센터 기업 양성평등 조직 문화 조성 지원 강화 및 여성 청년 취업지원 전담 인력 배정

## 정책 3 디지털 성범죄(기술 기반 젠더 폭력) 철폐

- 한국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0대를 대상으로 한 몸캠 피싱 등 성착취물 범죄 피해는 큰 폭으로 증가함.
- 디지털 성범죄 처벌강화 및 처벌범위 확대 등 젠더폭력 처벌공백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줄이는 데는 기여하지 못함.
-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자 대비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피해자가 직접 영상 삭제 등을 요청하는 등 피해를 복구해야 하는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문제가 있음.
-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 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협박 등에 의해 드러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전체적인 범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함.
-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고, 가해 및 피해를 경험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다양해지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목표와 내용을 위한 교육 분야에 있어서 성범죄, 성평등 등 개념의 명확한 확립이 필요함.

### ○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 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범죄 구성 요건이 타인의 동의 여부가 아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에 근거하고 있어 국한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2에서 허위영상물 제작이 처벌받는 경우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조건부가 있어, 반포가 아닌 보관의 목적인 경우 처벌할 수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2에서 촬영, 복제, 편집과 합성 등의 가공 행위를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결과물에 국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AI의 발달로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생성된 결과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불법촬영물 유포와 소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범죄 행위를 열거하여 국한적으로 적용됨.

#### · 세부과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구성요건을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촬영하는 행위로 수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2에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삭제 및 '생성' 개념 추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범죄행위를 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성적 이미지에 해당되도록 확대.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 확대

- 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 당시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나, 센터 예산 및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 · 세부과제

- 피해자 회복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
-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플랫폼 규제 강화

##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강화

-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최소 142억 원 감축한 것으로 추산되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및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 등 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 개선 및 홍보 예산 전액 삭감됨.

### · 세부과제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예산 복구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매뉴얼 실효성 제고 및 시의적 방안 마련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정규 교육과정 내 의무화

- ‘청소년 성교육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학생 4,065명 중 성소수자 관련 정보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1.1%. 여학생은 86.2%, 남학생은 70.1%가 성소수자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함.(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보수적 사회 분위기, 입시 관련 과목 위주 교육 풍토로 체육, 기술가정, 보건 교사 등이 행하는 성교육 및 성평등 교육은 경시되고 있음.
- 교사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발생한 후 6년이 지났지만 대다수의 교육청이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 및 가해 교사와 가해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가해 교사 중 상당수가 여전히 교단에 있을 것으로 추정함.

#### ○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강화

- 2024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권’ 등의 개념을 교육부가 삭제함.
- 이러한 퇴행적 조치에 유엔인권이사회(UNHRC) 측에서 국제 인권 규범 위반 지적 의견 발송하였으나, 교육부 측은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함.
- 최근 5년 동안 성인권교육에 참여한 인원이 꾸준히 증가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2024년 예산 중 성인권 교육 예산 약 5억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17개 시·도 중 13곳은 성인권 교육을 폐지함.

#### · 세부과제

-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관련 개념(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권 등) 표현 복구 및 성차별적 표현 삭제
- 학교 교원 및 학생의 성평등 교육 의무화 실시 및 교육의 질 제고
-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성인권 교육’ 사업 예산 복원 및 강화
- 학부모 성평등교육 확대 실시
- 유아동청소년 대상 콘텐츠 성평등모니터링 평가 기준 개발 및 적용
- 언론 미디어 콘텐츠 종사자 성평등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 확대 사전이수제 도입
- 청소년 성평등문화 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다각화

#### ○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교육’을 위한 시스템 확립

- 전국적으로 학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및 점검 안내를 실시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범행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

- 화장실, 탈의실, 보건실, 학생 휴게실 등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여성대상 범죄에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여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현장을 구축해야 함.
- 2014년부터 교육부가 교사 성범죄근절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했으나 이는 경징계차원. 징계 만료 후에는 별다른 제약 없이 교단 복귀가 가능함.
- 교육부 차원의 성범죄 교원 처벌은 현재 징계 수위에 따라 '최대 10년간 담임을 맡지 못한다'에 그치고 있음.
- 스쿨미투 가해자 교사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도록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가해자 신상과 처리 과정의 공개를 꺼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학생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할 시, 학교나 교사 차원에서 위협을 가하거나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였으며, 이후에도 가해교사와 피해학생이 철저히 분리되지 않은 채 사실 여부 확인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세부과제

- 학내 불법촬영 카메라 수시 불시 점검 체계 확립
- 안심 점검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제고
- 학내 성평등 및 안전에 대한 지표 개발 및 적용
- 성범죄 교원에 대한 신상 및 처리 과정 결과 공개 의무화
- 교육 분야 성범죄 처리와 결과 공개에 대한 투명성 제고
- 교육현장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법 제정
- 1:1 학내 성범죄 특수성을 고려한 신고 및 상담 핫라인 구축

# <평화·통일 부문>

<p>목표</p>	<p>평화문화 확산 및 평화체제 구축</p>
<p>제안 과제</p>	<p><b>1.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추진 전략 마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예산 삭감 및 공격적인 무기 개발과 도입 중단</li> <li>○ 접경지역 주민 안전보장 대책 마련</li> <li>○ 남북 간 대화채널 복원</li> </ul> <p><b>2. 평화 구축 과정의 여성 보호 및 참여 확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군 성노예제 및 강제동원 문제 해결</li> <li>○ 평화구축 공적 기구 여성 참여율 50% 실현</li> <li>○ 평화·통일 교육과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제도화 방안 마련</li> </ul> <p><b>3. 평화교육과 사회 통합 지원 확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및 시민들의 평화·통일 사회적 담론의 장 구축</li> <li>○ 통합적 접근의 청소년 및 시민평화교육 확대</li> <li>○ 북향여성(탈북여성)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 마련</li> </ul>

# 평화·통일

## - 평화 문화 확산 및 평화체제 구축 -

- 한반도 정세가 악화일로에 있다. 화해와 협력을 위한 대화가 아닌, 대립과 갈등,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북측은 최근 남한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였다. 남북관계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그에 더해 국지적 군사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 미국은 한·미·일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강화하고, 북·중·러는 미국의 고립과 압박 정책 속에서 대미 공세를 취하고 있다.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실리, 균형 외교로 다극화 추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신냉전 대결 정책에 호응하며 한반도 갈등과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다.
- 북측은 2018 북미정상회담의 불이행을 비판하며 강대강 정면승부 방향으로 군사력과 전쟁수행력을 강화해온 가운데, 한국은 공격적 무기가 대거 동원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대북전단금지법 무력화와 확성기 방송 재개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보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공격적 무기 개발과 도입에 집중되어 있는 국방예산을 삭감하여 민생 복지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전환해야 하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 핫라인 개설을 통해 남북이 주도하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 평화 구축 과정에 여성 보호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우선적 과제로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평화 통일 정책 관련 기구들에 여성 참여율을 높이고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교육과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평화적 관점을 확장함이 필요하다.
- 평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 평등, 민주주의의 통합적 관점을 통한 평화교육이 요구된다. 청소년과 청년세대와 공직자들의 평화교육 의무화,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평화적 담론의 장과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더불어 ‘먼저 온 통일’로 불리는 북향 여성들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과 요구를 반영한 지원 시스템 확충이 요구된다.

## 정책 1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추진 전략 마련

- 2023년 12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 사변 준비를 하겠다고 공포함. 올해 초 북한은 북방한계선(NLL) 북쪽 일대에서 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남한해병대는 서해 북단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함.
- 미국과 남한은 연합전투사격훈련을 해왔으며, 한국 육군 포사격 훈련과 해군 동·서·남해 전역 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이 대대적으로 진행됨. 이로 인해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짐. 접경 지역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919 군사 합의가 복원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 또한 재개되어야 함.
- 한반도는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 속에서 남북 관계의 주체성이 약화되고 있음. 남북 간의 모든 대화 창구가 닫혀있고 북일 대화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음.
- 남북 관계의 주도성을 찾기 위해서는 핫라인을 비롯한 남북 채널이 개설되어 함.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추진전략과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련하여 남북 교류와 협력에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여야 함.

### ○ 국방예산 삭감 및 공격적인 무기 개발과 도입 중단

- 한국 정부는 지난 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상정한 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하여 을지 프리덤 실드(UFS) 연습을 전개함. 북측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대남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선언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전환하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음. 한국 국방비는 2023년 대비 4.2% 증가한 59.4조원을 2024년 예산으로 확정하였고, 킬체인 전력(F-X 2차 등 3조 3,010억원), 복합다층미사일방어 전력(L-SAM 등 1조 5,661억 원), 대량응징보복 전력(고위력미사일, 특임여단 전력보강-II 등 7,483억 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425사업 등 1조 5,411억 원) 등 한국형 3축 체계 핵심전력 증강으로 북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으로 구축한다는 명분하에 대량 살상 무기를 비롯한 무기체계 획득에 사용되고 있음. 현재 세계 국방비는 6~9위 순위로서 매해 증액되고 있으며, 윤정부는 추후 5년간 349조를 국방비에 투입할 예정임을 밝힘. 남북은 전쟁 연습을 중단함과 동시에 국방예산을 민생과 복지에 사용하여야 할 것임.

#### · 세부과제

- 국방예산 삭감 및 민생 복지 확대
- 공격적 무기 개발과 도입 중단

## ○ 접경지역 주민 안전보장 대책 마련

-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들어 위헌 결정했음. 지난 연말연시 접경지역 육상 동서부 전체와 해상 동서남해 전역에서 실사격 훈련이 진행되었음. 확장기 방송 재개와 함께 무인기(드론)을 이용한 대북전단살포가 2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으로 접경지역 충돌 위기는 더욱 심각해진 상황임.
- 대북전단살포 금지는 '2018년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확장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 그 수단 철폐'를 약속했던 4·27 판문점선언 2조1항의 법적 이행임. 무엇보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면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은 재개되어야 함.
- 2023년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함.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조항 남북 사이 무력 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판이었던 군사 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는 현재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반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최악의 대응임.

### · 세부과제

-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재개
-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철회 및 복원

## ○ 남북 간 대화채널 복원

- 남북 간 언제든지 직통할 수 있는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 통신선은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 대결 구도 속에서도 유지되었음.
- 남북 간의 기존 군사채널 전면 복원과 핫라인 개설을 통해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의 이익 영역에서 협력할 것을 합의해야 함.
- 더불어 교착 상태에 있는 남북 관계 전환을 위해 남북 경제협력과 경제교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한미일 관계와 북미 관계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남북 간 주도적 관계를 형성해나가도록 해야 함. 다각적인 남북 간 대화의 창을 모색하고, 남북 경험 합의 이행 추진단을 설치하여 경제, 사회, 문화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 세부과제

- 남북 핫라인 개설
- 기존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 통신선 전면 복원 추진

## 정책 2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 보호 및 참여 확대

- 전쟁 당시 국가의 폭력 하에 벌어진 일본의 조직적 성범죄인 일본군‘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매주 열리는 수요시위를 협박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보수단체들의 폭력적 행동이 심각해짐.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적 사실을 부정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UNSCR) 1325호는 전쟁과 갈등 속에서 구조적·조직적 폭력에 희생되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주도성과 참여의 중요성을 제기함. 또한 국제사회는 전시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 WPS(여성·평화·안보) 관점을 통해 평화 협의와 구축의 공적 기구에 여성의 참여율을 확대해야 함. 국내 평화통일 정책 논의와 추진 단위들에 성평등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화하며 여성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부서 및 담당관이 필요함.

### ○ 일본군 성노예제 및 강제동원 문제 해결

- 1995년 북경여성행동강령은 무력분쟁 하 여성의 취약성과 전쟁 수단으로서 성폭력, 성노예, 강제임신 등으로 인해 여성이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죄로 인식하고 있음. 2023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냄. 여전히 역사적 진실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와 강제 동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함으로써 올바른 한일 관계 구축에 힘써야 함.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부정과 왜곡,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강력하게 금지되어야 함.

#### · 세부과제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 ○ 평화구축 공적 기구 여성 참여율 50% 실현

- 유엔 결의안 1325 국가행동계획은 평화구축 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를 명시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 평화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 과정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활동을 지원할 것을 밝히고 있음.

- 평화 구축 과정의 모든 공적 기구에서 여성 참여율 50% 실현으로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각 부처에 한반도 평화 논의를 위한 통합적 민관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함.

· 세부과제

- 평화 구축 기구 공적기구들에 여성 참여율 50%로 확대

○ 평화·통일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제도화 방안 마련

- 평화 구축 과정에 WPS(Women, Peace, Security, 여성·평화·안보) 관점을 통해 여성들이 평화 통일 정책과 교육 전반에 참여하도록 하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지원을 연구 및 전개하도록 해야 함.
-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과 더불어 남북여성들의 학술교류, 성평등 사회를 위한 공감대 형성, 생활 밀착형 의제 중심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 남북여성교류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함.

· 세부과제

- 통일부를 비롯한 통일 정책 관련 부처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한 평화통일 정책 기구 설치
- 남북여성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여성교류협력위원회 설치

### 정책 3 평화교육과 사회 통합 지원 확대

- 한반도는 안보 강화를 위한 군비 확장을 벗어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합의들을 통해서 남남·남북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고 민주사회로 회복해갈 수 있음. 한반도 평화는 단번에 통일을 통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감으로써 구축되어짐.
-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 교육은 민족성에 근거한 통일담론을 넘어 사회전반의 폭력 구조에 대한 성찰, 인권과 평등 및 민주사회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관점의 글로벌 평화교육이어야 함. 특정 교과목을 통해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영역에서 통합적 접근이 되는 연구 개발 과정이 필요함.
- 평화 문화 확산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확대가 필요하며, 공직자 평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평화 교육 의무화와 시민 평화 교육을 위한 지원과 확대 또한 요구됨.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의 장을 통해 청년 및 시민들이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는 것 역시 필수적인 과정임.
- 북향민(탈북민)들의 생활고와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한 극단적 위기 사례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 특히 남한 거주 북향민 구성원의 80%에 달하는 여성들은 정착과 적응 과정에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통합적인 지원과 더불어 북향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한 시스템을 확충해야 함.

#### ○ 청년 및 시민들의 평화·통일 사회적 담론의 장 구축

-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대북 정책 구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평화와 통일에 관한 대화의 장을 구축해야 함. 시민들이 한반도 평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책형성에 참여하는 기초 단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담론의 장이 지속적으로 형성되어야 함. 평화·통일과 평화 체제에 대한 청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실제적으로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함.

#### · 세부과제

- 평화와 통일에 관한 시민사회 사회적 대화 운영 확대

#### ○ 통합적 접근의 청소년 및 시민평화교육 확대

- 청소년 대상 평화교육은 사회 전반에 걸친 폭력 구조를 성찰하고 통일 시대에 대한 평화적 상상력을 필요로 함. 정부 정책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바뀌거나 안보적 관점으로 운영되어선 안 됨.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시민사회를 선경험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한반도 통일 체제를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함. 국가주의나 단일민족주의를

넘어서서 민주성, 평등, 인권 등의 통합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가진 청소년 평화교육의무화 교과과정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평화교육에도 지원을 확대하여 함.

- 상호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소수자, 다문화 이해, 성평등 등의 포괄적인 가치를 담은 세계평화시민 교육을 시민사회 안에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세부과제

- 청소년 평화교육 의무화 교과과정 마련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평화교육 운영 지원
- 공직자 평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평화 교육 의무화
- 소수자, 다문화 이해 등의 포괄적 관점의 시민평화교육 확대

○ 북향여성(탈북여성)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 마련

- 북향민의 80%는 여성들이며, 대부분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가 많음.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및 소속 지자체의 경제적 지원 체계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음. 북향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한 역량 강화 시스템 확충,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해 통일부와 지자체간 행정의 일원화 및 제도의 정비 통한 효율적 지원 필요.

· 세부과제

- 북향여성 심리·정서적 지원에 기반한 행정의 일원화 및 제도 정비
- 북향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 및 역량 강화 시스템 확충